

# 1978年度産 山林苗木價格 內容分析

韓國養苗協會 專務理事 李 在 石

1. 前 言
2. 原價計算上 是正된 事項
3. 남은 問題點
4. 結 言

## 1. 前 言

1978年度産 山林種苗價格이 지난 12月 6日 字山林廳告示 第14號로 決定告示 되었다.

前年産 對比 그價格引上幅은 樹種別로 多少 差異는 있지만 加重值로서 平均 22.3%가 引上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引上率 22.3% 自体만두고 보면 언뜻 보기에는 참 많이 올랐는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山林種苗價格 原價計算上 構成因子內容을 分析하지 않고 皮相的으로 볼때는 그런 생각이 날 것이다. 더우기 1978年度 一般都賣物價上昇도 15~16%線에 머물고 있고 農産物中에 大宗을 이루는 쌀도 政府買入價格이 昨年産對比 15%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客觀的 與件等은 山林種苗價格引上幅이 높았다는 인상을 더욱 짓게 한다.

그러나 山林種苗價格의 引上率은 別다른 意味를 갖지 못한다.

前年度産 價格이 現實化가 되었다면 22.3%의 引上幅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山林種苗價格이 現實化가 못된 理由는 크게 두가지로 分析할수가 있다.

그 첫째 理由는 單位面積當 得苗本數가 너무 높게 策定이 되어 實地로 生産이 되지 않은것을 生産된것으로 原價를 計算하기 때문에 種苗價格이 現實과 거리가 먼 原因은 여기에 있다.

得苗本數 1%는 價格에 1%를 影響하는데

1978年度의 경우는 史上類例 없는 40年來의 가뭄으로 單位面積當 得苗本數가 價格을 査定하는 得苗基準本數의 62%線에 머물었으니 得苗本數에서 38% 價格이 올라야 할것이 못올라가고 말았다.

또 둘째 理由는 勞賃單價다. 苗木生産費의 近 50%를 占하는 勞賃이 男子 1人1日 3,000원은 주어야하는것을 1,830원으로 計上 하였으니 이도 61%밖에 計上을 하지 않아 苗木價格에 20%以上 引上要因이 그대로 묵살되고 만것이다.

今年度産 種苗價格에서 22.3%가 오른것은 主로 物價變動에 自然增加率이고 여기에 가뭄으로 灌水費用이 若干들어 있고 企業利益의 計算方法 金利의 算定期間調整等이 있으나 이것이 價格 現實化를 하는데는 별영향을 못했다.

그래서 1978年度 苗木價格이 現實化되자면 得苗本數 現實化에서 38% 勞賃에서 20% 物價上昇率에 依한 單價變動에서 22% 合計 80%는 引上 되었어야 山林種苗業의 維持 發展을 期할수 있었을것이다. 苗木生産者들은 充實한 健苗를 生産하는 것이 義務인 同時에 正當한 價格을 要求하는것은 神聖한 權利다.

그래서 本論은 1978年度産 價格內容이 大體的으로 어떻게 決定되었고 그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分析檢討함으로써 價格現實化가 못된 그 原因을 알고 繼續 우리의 主張을 해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

## 2. 原價計算上 是正된 事項

1978年度産 山林苗木價格 原價計算上 價格自体에는 2% 밖에 影響하지 않지만 計算方法에 矛盾이 있는것 한두가지가 是正이 되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數年來 우리가 主張하는 것으로 企業利益計算을 中間諸費에서 10% 計上하든것을 總原價 다시 말하여 外形에서 一定 企業利益을 計上 해주고 또 企業利益도 內務部에서 山林苗木 乙類農地稅 所得標準率과 合致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建議를 했다.

從前에는 內務部에서 山林苗木乙類農地稅를 負課하기 爲한 所得標準率은 苗木代 總原價(外形)의 11~13%를 計上하여 稅金을 거두어 가면서 山林廳에서 苗木價格原價計算에는 企業利益을 直接生産費의 10%밖에 計上하지 않음으로서 이는 總苗木代(外形)의 8%內外 밖에 되지 않아 結果의으로 같은 內務部에서 稅政當局에서는 稅金을 거두어가는것은 높이 所得을 策定하고 山林廳에서 價格上의 所得을 적게 策定해서 오는 모순점은 이번에 是正이 되었다.

內務部에서 定한 所得標準率 11%를 總原價에서 企業利益으로 計上 했고 從前에 乙類農地稅 公課金은 따로 計上을 하지 않고 企業利益에 包含시킨것은 法 理論上 妥當한것으로 본다. 이는 上昇率 自体가 큰 問題가 되는것이 아니다. 法 理論上 또 行政事務條理上 原價計算上에 있어서 하나의 發展이라고 볼수 있다.

今年度價格에서 모든것을 잃었지만 制度的으로 얻은것이 있다면 이것 하나 뿐이다.

結局 말을 바꾸면 從前에 原價에서 企業利益을 總原價에서 8% 보든것을 11%로 보고 從前에 公課金을 總原價에서 1%보든것을 없애고 企業利益에 包含시켰기 때문에 이를 是正함으로서 總原價에서 價格이 2% 오른 結果가 되었다.

또하나 生産者 意見이 100% 반영된것은 아니나 金利算定期間 調整問題다.

金利算定期間이 生産翌年度 4월까지 苗木代를 精算되는 것으로 했으나 다음表에서 보는것과 같이 1977年度는 苗木代가 4月末까지 1%밖에 徵收가 되지 않았고 1978年은 4月末까지 4%밖에 徵收가 되지 않았다.

(1) 1977年度 苗木代 精算狀況表

單位：千圓

月 別	精 算 額	精 算 比 率
4 月 末	30,330	1%
6 月 末	1,829,351	62
9 月 末	2,803,461	95
10 月 末	—	
11 月 末	—	
12 月 末	163,049	5
總 苗 木 代	2,966,510	100

(2) 1978年度 苗木代 精算狀況表

單位：千圓

月 別	精 算 額	精算比率備考
4 月 末	131,847	4%
5 月 末	864,745	28
6 月 末	1,547,109	51
7 月 末	1,955,285	64
8 月 末	2,270,266	75
9 月 末	2,654,839	88
末 精 算	359,406	12
總 苗 木 代	3,014,245	100

1978年度의 경우는 種苗 價格이 決定되는 12월3일까지도 12%만 未徵收苗木代가 있는가 하면 全羅南北道같은곳은 아직도 30~40% 苗木代가 未清算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主張은 播種育苗資金은 苗木代 精算이 되지 않아 해마다 年中行事처럼 農協資金을 6月末까지 償還延期를 해주고 있는 터임으로 그때까지 利子를 計上해주고 掘取資金은 10月末까지 利子를 計上할것을 要求했다.

그러나 이것도 從前에 4월까지만 바꾸든 金利를 5월까지 計上을 했지만 生産者들이 總苗木代의 2% 가까운 原價에도 없는 利子를 물고 있다.

이 利子라는 것은 支給利子이기 때문에 實地로 負擔하는 利子は 當然히 原價에 計上 되어야

한다고 본다.

### 3. 남은 問題點

序論에서도 言及을 했지만 實地單位面積當 得 苗本數와 山林廳 價格을 査定하는 例規上의 得 苗本數間에 差異가 너무커서 이 例規대로 價格을 査定하면 價格現實化의 길은 멀다고 본다.

1978年度產 山林事業用苗木의 企業主分 成幼 苗別 總得苗豫定量(實態報告分)을 總施業床面積으로 나누어 보면 實地得苗本數는 價格을 決定한 山林廳例規上 得苗本數에 比하여 平均成苗는 62% 幼苗는 32% 밖에 生産이 되지 않았다.

(다음 表參照)

成幼 苗別	樹 種 別	苗令	施 業 床 面 積	得 苗 豫 定 量	價格適 比		
					當 用 得 苗 量	當 用 得 苗 量	比 率
成 苗	잣 나 무	2-0	264,774	26,236	99	125	79
		3-0	59,735	7,349	123	160	76
		2-1	154,431	6,536	42	84	50
	낙엽송	1-1	1,964,194	65,508	33	50	66
	삼 나 무	1-1	426,931	10,958	26	48	54
	편 백	1-1	287,208	4,860	17	48	35
	테 에 다	1-1	14,620	259	17	56	30
산오리나무	1-0	128,865	6,869	53	85	62	
幼 苗	낙엽송	1-0	326,602	83,483	255	500	51
	삼 나 무	1-0	73,716	9,528	129	400	32
	편 백	1-0	86,572	8,824	102	450	22
	테 에 다	1-0	59,306	4,697	79	360	21
	잣 나 무	1-0	184,274	35,791	194	320	60

前表는 40年來의 가뭄被害가 있어서 隔差가 심했을 뿐이지 事實은 1971~1977年까지 7年間 樹種別로 成苗의 總生産量을 그동안 總施業床面積으로 나누어 보면 實地得苗本數와 山林廳例規上의 得苗本數間에는 다음 表에서 삼나무 移植 苗와 같이 甚한것은 29% 잣나무 3-0과같이 낮은것도 11% 平均 13%의 差異가 있어 恒常 10%以上을 이 得苗本數가 價格을 蠶食하기 때문

樹種別	苗令	71~77 年間施業			價格查 定 得 苗 本 數	差 異
		床 面 積	得 苗 本 數	當 用 得 苗 本 數		
낙엽송	1-1	8,914,942	395,968	44	50	6.13
잣나무	3-0	378,331	53,504	141	160	19.01
삼나무	1-1	2,380,653	89,839	37	48	11.29
편 백	1-1	1,813,618	70,963	39	48	9.23
산오리	1-0	4,830,055	363,246	75	85	10.13

에 이 得苗本數의 調整이 없는限 價格現實化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여기에서 得苗本數의 問題點은 價格査定에서 가장 重要한 因子인데도 이 山林廳 例規上 得苗本數가 定해질때 林業試驗場이나 其他試驗機關에 試驗을 거쳐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山林行政當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現實과 맞지를 않는다.

또 여기서 付言할것은 例規는 어디까지나 例規로서 하나의 標準이지 農產物이란 그해 氣候에 絕對的인 影響을 받고 또 苗木價格이란 最少限의 生産費 補償이라는 뜻을 둔다면 그해 作況에 依하여 決定하는것이 妥當한것으로 본다. 올해와 같이 成苗의 경우 例規值의 62% 幼苗의 경우 32% 밖에 成되는 作況에 例規대로 生産이 되는것으로 보고 價格을 査定한다는 것은 잘못 된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알기 쉬운 例를 들면 낙엽송 移植苗는 今年 全國의으로 企業主 總施業床面積 190萬㎡인데 價格을 査定한 ㎡當 50本 生産이 可能했다면 95,000千本이 生産되어야한다. 그런데 實態調査한 量이 65,000千本 이니 이를 掘取選苗하는 過程에서 2割인 13,000千本이 출면 52,000千本밖에 生産이 되지 않는다.

結局 折半밖에 生産이 되지 않는것을 生産된 것으로 보았다.

山林苗木과 原價査定上 가장 가까운것이 桑苗인데 이는 得苗本數를 해마다 標準地 調査를 해서 그해 作況으로 決定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今年度 作況에 依한 得苗本數대로 價格을 査定해 주는것이 當然하지만 政府의 豫算事情도 있고 造林物量計劃도 있고 하니 過去 7個年

間 平均 得 苗 本 數 를 適 用 해 서 라 도 多 少 勘 察 科 出 發 點 을 要 求 했 지 만 이 도 未 滿 意 로 말 았 다.

다 음 에 는 勞 賃 單 價 是 林 業 乃 至 是 山 林 苗 圃 科 對 한 經 驗 과 知 識 이 없 는 사 람 도 잘 알 수 있 다.

苗 圃 勞 賃 單 價 를 政 府 勞 賃 單 價 로 固 守 해 야 된 다 는 大 原 則 下 에 查 定 하 다 보 니 다 음 表 와 같 이 實 地 單 價 에 57~79% 에 未 吸 收 이 있 다.

우 리 는 政 府 勞 賃 單 價 를 固 守 해 야 하 는 그 理 由 를 잘 모 르 다.

1972 年 度 產 山 林 種 苗 價 格 은 道 知 事 報 告 平 均

區 分	政 府 單 價	實 地 單 價	比 率	備 考
特 殊 人 夫	2,770 圓	3,500 圓	79	桑 苗 適 用 單 價 2,200
一 般 人 夫 (男)	1,830	3,000	61	山 林 苗 木 適 用 單 價 1,387
" (女)	1,150	2,000	57	

單 價 를 適 用 했 고 1973 年 度 產 種 苗 價 格 을 道 知 事 報 告 值 及 政 府 單 價 를 平 均 해 서 適 用 했 으 며 같 은 政 府 生 產 費 調 書 單 價 에 桑 苗 는 實 地 單 價 를 適 用 하 고 있 다. 或 者 는 桑 苗 는 協 定 價 格 이 라 고 하 지 만 이 는 內 容 을 모 르 는 사 람 들 의 이 야 기 다.

蠶 絲 法 에 依 하 여 嚴 然 히 農 水 產 部 長 官 이 決 定 하 고 있 고 또 桑 苗 購 入 은 全 額 自 力 負 擔 이 라 고 하 나 一 部 國 庫 一 部 地 方 費 一 部 自 力 으 로 싣 어 지 고 있 다.

女 子 人 夫 賃 의 경 우 2,000 圓 주 어 야 할 것 을 1,150 圓 주 어 서 일 을 할 수 있 겠 느 냐 하 는 것 을 쉽 게 생 각 할 수 있 다.

이 勞 賃 問 題 는 勞 賃 自 體 問 題 가 되 는 것 이 아 니 라 勞 働 力 確 保 가 더 욱 問 題 가 되 어 男 子 3,000 圓 女 子 2,000 圓 을 주 어 도 사 람 구 하 기 가 어 려 운 판 에 그 折 半 또 는 움 를 주 고 일 을 할 수 있 겠 는 가 하 는 것 은 농 촌 사 정 을 조 금 이 라 도 안 다 면 이 해 를 풀 리 할 수 있 다.

#### 4. 結 言

苗 木 價 格 은 得 苗 本 數 의 非 現 實 化 勞 賃 單 價 의 非 現 實 化 金 利 算 定 期 間 의 差 異 및 人 力 으 로 不 可 抗 力 의 凍 害, 水 害, 旱 害 등 의 災 害 로 累 積 이 되 어 年 間 20% 引 上 幅 은 外 面 으 로 는 높 은 引 上 幅 이 지 만 現 實 과 는 거 리 가 멀 다.

今 年 來 年 하 고 農 事 하 는 마 음 으 로 미 련 을 두 고 오 다 가 今 年 에 歷 史 的 인 旱 害 를 입 어 災 害 로 因 한 被 害 가 큰 사 람 은 幾 千 萬 圓 적 은 사 람 은 幾 百 萬 圓 平 均 6 百 萬 圓 의 災 害 와 빚 을 지 고 있 다.

內 容 을 모 르 는 사 람 들 은 收 支 가 맞 지 아 니 하 면 그 만 두 면 될 것 이 아 니 나 하 는 말 을 한 다. 이 一 次 土 地 生 產 業 이 가 게 에 서 장 사 하 는 사 람 처 럼 在 庫 整 理 를 하 고 그 만 두 면 되 는 것 같 이 생 각 할 는 지 모 르 다. 그 러 나 內 容 인 즉 은 그 령 지 못 하 다

山 林 苗 圃 에 서 만 專 用 하 는 農 具 等 固 定 資 產 이 市 場 性 이 있 어 서 하 루 아 침 에 賣 買 가 이 루 워 지 는 것 이 아 니 고 苗 圃 業 을 生 業 으 로 거 의 一 平 生 을 살 아 오 는 사 람 들 이 이 技 術 以 外 別 로 아 는 知 識 이 없 어 轉 職 할 고 용 機 會 가 주 어 지 있 지 않 다. 뿐 단 아 니 라, 農 協 資 金 은 信 用 融 資 라 會 員 기 리 相 互 連 帶 가 되 어 있 어 이 빚 을 갚 지 않 으 면 물 려 설 수 도 없 고 또 물 려 갈 수 도 없 게 되 어 있 다.

그 래 서 生 計 라 도 유 지 가 된 다 면 이 業 을 繼 續 할 수 밖 에 없 게 되 어 있 다.

이 러 한 判 국 價 格 現 實 化 가 되 어 도 勞 働 力 不 足 現 象 에 갈 길 을 잃 고 해 매 는 판 인 데 價 格 마 저 現 實 과 는 거 리 가 멀 때 는 生 產 費 를 아 껴 서 이 른 마 縮 少 再 生 產 을 誘 引 할 憂 慮 가 있 고 따 라 서 그 結 果 는 苗 木 의 質 이 형 편 없 이 멀 어 질 걱 정 을 알 할 수 없 다. 우 리 가 山 林 苗 木 에 對 한 原 價 內 容 을 全 然 모 르 는 사 람 이 라 고 하 드 라 도 온 상 에 서 2~3 個 月 에 걸 쳐 나 오 는 고 추 모 한 쪽 이 에 50 圓 이 다.

1 年 生 花 草 苗 1 本 에 100 圓 이 다. 여 기 에 比 하 여 3~5 年 間 種 子 를 임 업 시 험 장 에 유 료 로 보 관 했 다 가 1 年 유 료 를 키 워 서 다 음 해 에 이 식 을 해 서 3 年 째 봄 에 산 출 하 는 낙 엽 송 모 목 하 나 가 22 圓 이 라 면 너 무 싼 값 이 아 니 겠 느 냐 하 는 질 문 을 해 본 다. 또 어 느 事 業 이 고 間 에 雜 費 其 他 非 法 定 公 課 金 이 없 는 것 이 없 다.

이 러 한 것 도 原 價 에 한 분 도 計 上 이 되 지 않 았 다. 금 년 과 같 은 天 災 가 있 어 도 이 것 이 一 種 의 政 府 와 生 產 者 間 에 契 約 裁 培 인 데 도 한 분 의 補 償 이 없 었 다. 이 러 한 結 果 는 全 國 의 由 來 養 苗 業 者 들 이 300 餘 名 에 가 가 있 는 데 지 금 남 은 것 은 130 餘 名 이 고 余 他 는 轉 廢 業 을 했 다.

오늘 날 우 리 山 林 綠 化 가 이 쯤 까 지 라 도 된 것 은 이 들 이 犧 牲 의 祭 物 이 되 었 다 는 事 實 을 잊 어 서 는 안 된 다. 당 국 에 서 도 價 格 抑 制 가 能 事 라 고 만 생 각 하 지 말 고 무 엇 인 가 苗 木 生 產 者 들 도 숨 을 쉴 수 있 는 구 멍 을 뚫 어 주 고 그 들 의 義 務 를 要 求 해 야 할 것 이 다.

1978년도산 정부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1. 성 묘

단위 : (원)

수	종	묘	형	1,000본당가격	수	종	묘	형	1,000본당가격	
낙엽송			1-1	22,845	독일가문비			2-1	33,210	
			1-0	14,214				1-0	10,801	
잣나무			2-0	13,921	쪽제비싸리			1-0	5,688	
			3-0	23,844				1-0	18,472	
			2-1	25,999				1-0	19,706	
			2-2	28,809				1-0	17,481	
삼나무			2-3	46,318	줄잎산오리			1-0	18,931	
			1-1	26,412				밤나무	저절	119,654
			1-1-1	40,538				"	고절	190,936
편백			1-1	24,559	살구나무			접목	117,640	
			1-1-1	39,197				은수원사시	1/1 1급묘	70,745
강해리			1-1	14,500	"	"	"	2급묘	56,596	
			1-1	13,145	"	"	1/2	126,009		
리기테다			1-1	11,617	이태리포플러			1/1 1급묘	63,744	
			1-0	7,594				"	"	2급묘
리기테다			1-1	11,799	"	"	"	1/2	110,087	
			1-1	24,325	오동나무	실생	110,339			
"			1-0	12,113						

2. 유 묘

수	종	묘	형	1,000본당가격	수	종	묘	형	1,000본당가격
낙엽송			1-0	3,880	해송			1-0	2,558
삼나무			1-0	4,949	리기테다			1-0	2,481
편백			1-0	4,295	밤나무			1-0	28,560
강해리			1-0	2,955	테다			1-0	6,520

3. 종 자

수	종	순량율	발아율	당단가	수	종	순량율	발아율	당단가
낙엽송		90.2%	39.7%	2,615	리기테다		90.6%	84.7%	1,496
삼나무		90.0	32.3	1,826	리기테다		90.6	—	3,456
편백		90.0	12.1	1,826	오리나무		59.9	29.2	917
강해리		93.4	87.4	1,889	아까시		89.7	63.8	1,070
해송		95.7	91.7	1,743					

※ 부대조건

본 종묘가격은 완전 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이며 단 밤나무 유묘는 거치묘 단가임.